

# 검역체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국제기준 이행 불가피한 현실  
조직, 기능 강화로 정예화·전문화 시급



박 병 원

국립식물검역소 조사연구과장

우리나라의 식물검역은 1912년 12월 조선총독부 시절 과수와 벚나무에 대한 검역으로 시작되었다. 45년 해방과 함께 중단되었다가 59년 6월 1일 농림부와 전국의 10개 세관, 11개시도에 검역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고 구법령에 의거 식물검역업무가 재개(再開)되었다. 61년 12월 30일 대한민국 법령으로 식물방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 명실상부한 식물검역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독립기관이 아닌 일선세관에 주재근무를 함으로써 제한적인 범위의 식물검역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78년 4월 12일 농수산부 산하에 국립식물 검역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새

로운 계기를 마련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제간 교역량이 많지 않았을 때에는 농산물의 수입량도 적고 수입품목과 수입국이 단순하여 그 당시의 검역체계로도 별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80년대의 수입자유화 정책에 따른 무역확대로 농산물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되면서 수입 품목이 다양화되고 수입국이 다변화됨에 따라 외래병해충의 유입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세계각국은 농산물의 교역에 제한을 두는 검역조치를 완화하기 위해 1993년 12월 15일 자로 GATT/UR협상에서 “위생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합의하여 1995년 7월 1일 발효 예정으로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식물검역 분야의 각종 규정이나 제반 업무를 국제화, 과학화, 명료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물검역 체계의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1. 식물검역의 현황

### 가. 조직과 인원

식물검역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기획, 조사연구, 현업검역 분야로 구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식물검역소가 발족될 때 까지 일선 세관에 주재근무를 함에 따라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많았다. 78년 국립식물검역소가 발족되면서도 본소에 기획업무와 지소, 출장소의 현업업무만 있고 식물검역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분야를 담당해야 할 조직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출발했다. 다행히 90년에 와서 비로소 국제검역정보과와 조사연구과가 증설되어 각 분야별로 기초연구를 담당할 기본 조직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미흡한 편이다. 일선 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소와 출장소도 그간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통해 5개 지소, 1개 격리재배관리소, 18개 출장소를 두고 있으나 수입자유화 이후 그야말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농산물을 완벽하게 검역하여 유해병해충을 완전 차단하는 데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인원 면에서는 1959년 식물검역의 재개때 23명으로 출발하여 1994년 9월 현재 230명이 확보됨에 따라 외형적으로는 많은 인력증원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230명중 검역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은 160명으로 전체 인력의 7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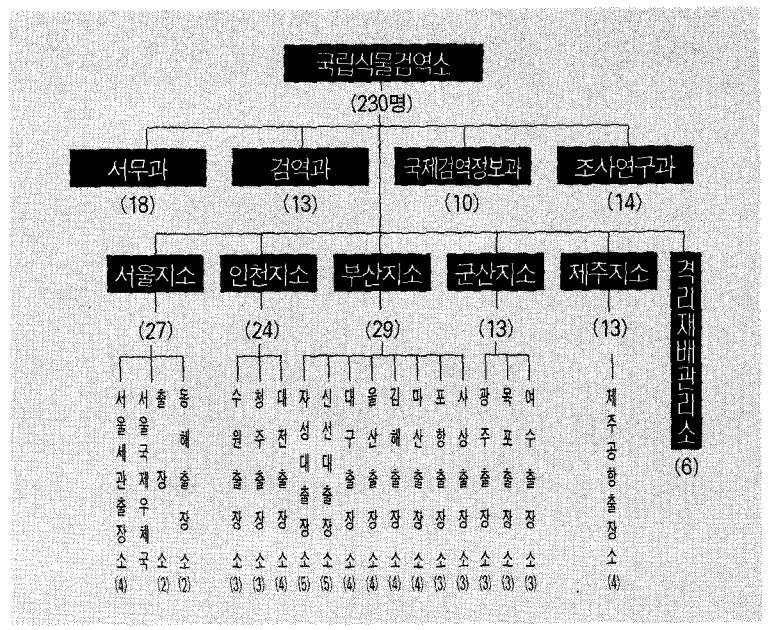
검역량에 대비하여 적장수준의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검역량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검역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570 건이다. 일본의 209건에 비해 2.7배나 많다. 기간내 처리해야 하는 민원업무의 특성상 정밀검

역에는 구조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식물검역에 종사하는 검역관은 최소한 병해충에 관한 지식과 소독업무와 관련된 이화학분야의 기초지식, 수입식물의 다양화에 따른 식물의 분류와 생태에 관한 지식, 법규집행에 따른 법률지식 등 다방면에 많은 지식을 요구받고 있다.

선진외국의 경우 식물검역관은 특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현업에 종사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직렬이나 자격요건 없이 일반 농업직 공무원은 누구나 식물검역 업무에 종사할 수 있어 정밀검역에 관한 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

표1. 국립식물검역소 기구 및 정원



## 나. 식물검역제도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따른 식물검역의 규제로는 절대금지와 제한금지, 조건부 수입이 있고 검역의 규제없이 자유로이 수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에 대한 검역은 식물방역법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수출입식물검역규칙, 식검고시(植檢告示), 식검예규(植檢例規)에 의하고 있다. 검역법상 규제없이 수입될 수 있는 농산물은 수입식물 검역규칙의 검사대상 제외품목에 예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부분 가공전에 부착되어 있는 병해충을 가공(방부, 발효, 절임, 고열처리 등)하여 완전히 사멸하고 가공후에 진공포장 등으로 병해충의 재감염이 될 수 없는 상태의 것인 반면 그외 예시되지 않은 식물류와 식물에 해를 주는 유해동식물은 각 규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식물방역법은 제정 당시의 국내외 사정과 현재의 식물검역 여건이 크게 변화되고 있어 검역제도 면에서도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식물검역 대상 식물의 분류문제이다. 외국의 경우는 재식용(栽植用)과 신선한 과일, 채소 등이 포함된 “식물”과, 곡류 등 비재식용의 “식물성산물”로 규정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현화(顯花)식물, 양치(羊齒)식물, 선태(蘚苔)식물의 종자, 과일 및

## 특·별·기·획 4

가공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해충의 관리적 측면이 아닌 일반적 분류로 되어 있다.

둘째, 대상병해충의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자국(自國)에 분포하지 않고, 유입될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큰 검역병해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내 분포 여부와 관계없이 식물에 피해를 주는 모든 유해동식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으로부터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셋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식물은 대부분 수출국에서 발행하는 “수출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22종의 금지병해충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산 식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재식용식물과 생식물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품목별 사전 허가제를 취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규정은 경직되어 있어 운용

이 어렵고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넷째로, 병해충관리 측면에서 보면 외국의 경우 대상식물을 수입할 때 수입전에 병해충 위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병해충 안전지역을 설정하거나 현지소독, 현지검역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2종의 금지 병해충에 대해서는 수입전 특별 조건을 제시하지만 73종의 제한 병해충과 129종의 관리병해충, 기타병해충에 대해서는 도착지 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만 대상 병해충별로 폐기, 반송하거나 소독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 처음 발견되는 병해충에 대해서는 “병해충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검역과정에서 병해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편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의 처분까지의 기간중 비산(飛散) 등에 의해 국

내에 유입, 확산될 우려가 있다.

## 다. 식물검역 동향

외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경우는 자국에서 근본적으로 생산량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수입하는 경우와 자국에서 생산은 가능하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에서 뛰어지기 때문에 수입하는 경우, 일시적인 흥작에 의해 긴급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64년부터 93년까지 30년간 식물검역 대상 농림산물의 수입동향을 보면 표2와 같이 80년대 이후 모든 식물류의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목재류나 곡류는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나 묘목류와 구근류, 과일류의 수입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채소류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수입 개방화 정책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국민 기호도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급증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수입증가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문제도 있지만 식물검역 측면에서 볼때 수입의 대량화, 고속화, 품목의 다양화, 수입국의 다변화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의 유입 기회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아울러 농산물 이외의 다른 화물에도 병해충이 부착하여 유입될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근

표2. 농림산물의 식물검역 동향(1964~1993)

	1964	1973	1983	1993
검역건수(건)	6,711	9,639	30,569	46,300
총수량(천M/T)	2,702	4,008	8,050	16,895
(천개)	128	1,475	18,343	100,297
(천M <sup>3</sup> )	1,089	5,440	6,714	8,442
곡 류(천M/T)	694	3,115	7,421	13,078
묘목류(천개)	99	794	4,081	25,607
구근류(“ ”)	16	302	14,261	74,559
과일류(천M/T)	0.096	10	12	185
채소류(“ ”)	0.001	0.03	5	21



국제기준의 이행이 불가피한 식물검역. 조직과 기능의 강화가 시급하다.

년에 일본과 유럽에서 대량으로 수입된 화훼류묘(花卉類苗)에 유해병해충의 알이나 유충이 부착되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볼 때 묘목류나 선선과채류의 대량수입은 농가소득의 감소라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은 물론 검역적 측면에서도 크게 우려되는 것이다.

#### 라. 식물검역의 대외정세

GATT/UR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세계각국의 식물검역은 각 국가별로 고유의 식물검역법 규의 체제하에서 나름대로 자국의 농산물이나 식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식물검역을 실시해왔고 국제간에도 서로의 권한을 인정하여 큰 마찰은 없었다. 그러나 93년 12월 15일자로 타결된 GATT/UR협상에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합의되어 95년 7월 1일부

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식물검역 분야의 국제기구인 FAO는 “식물검역 원칙”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어 검역에 관한 대외정세는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 협정 및 원칙에 따르면 모든 식물검역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여 실시하되 국제검역기준에 따라야 하며, 국제기구에서 개발한 병해충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검역병해충에 한하여 검역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국가는 시행에 별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식물방역법에서 금지품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입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금지품이라 하더라도 소독방법이 개발되어 병해충

을 완전히 사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서로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다. 이에따라 현재 우리나라도 미국산 파파야, 칠레산 포도, 스페인산 레몬 등 12개국 20개 품목에 대해 일정한 조건하에 개방 요구를 받고 있어 국제적 추세와 식물검역의 기술적 측면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 3. 식물검역의 발전방향

##### 가. 조직확대 및 기능강화

앞으로 식물검역은 국제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소와 지소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본소에는 병해충의 분류동정, 조사기법 개발과 소독방법 개발 등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곤충, 병리, 이화학 분야의 과단위 이상의 조직확대를 하여, 이들 과단위에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만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소와 출장소에서 실시한 일선 검역업무에서 발생한 1차적인 기술문제를 지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소 단위도 검역과, 조사과 등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증대되는 검역물량에 대한 신속하고도 원활한 검역을 위하여 일선 검역요원을 증원하는 등 검역조직과 기능 및 인력

을 보강해야 한다.

#### 나. 검역관의 정예화와 자질향상

식물검역관은 병해충 동정, 식물 분류, 소독방법 등 다방면의 고급기술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모든 검역관을 정예화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본소의 병리, 곤충, 이화학 담당과와 지소의 조사과에는 정예화된 검역 요원을 배치하여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전담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요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역직 직렬”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식물검역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선 검역요원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려면 전문분야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해외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다 높은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만 한다.

#### 다. 검역기반의 확충

이상적인 조직과 정예화된 검역인력을 확보하더라도 현장에서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실험실에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면 첨단을 걷는 일반사회나 외국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선 검역현장에서는 검사 시행장소를 지정하고 검역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 실험실에는 첨단장비는 물론 분석된 자료들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본소와 지소, 출장소간에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병해충 자료나 영상자료 등 모든 정보는 필요시마다 어느 곳에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FAO, CAB 등 외국의 전문기구나 기관, 국내 연구기관, 대학 등과 전산망을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라. 법령의 개정과 정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라 “식물검역원칙”은 이미 국제기준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병해충 위험평가 등 그 밖의 분야에 대한 국제기준도 새로이 제정중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현행 관계 법령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정비해야 한다. 즉, 현행의 유해동식물 관리체계에서 검역병해충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금지품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금지품은 재식용 중에서 유전자원 용이나 특수 시험용에 한하여 수량 등을 제한하여 특별관리 하고 과일, 생채소, 묘목류 등은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여 이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도록 하여 “병해충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수입을 허가하

는 제도를 도입하고 검역처분은 검역병해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정비해야 한다.

#### 마. 외래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 다중방어선(多重防禦線)구축

도착지 검역에서만 외래병해충을 차단하는 것은 60~70년대 건당 수입량이 묘목류의 경우 1~2백개씩이었을 때에는 전량 정밀검사를 통해 어느정도 가능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의 수입형태를 보면 묘목류의 경우 건당 2~5만개, 구근류는 1백만 개 이상의 것이 많아 도착지 검역에서 부착 병해충을 모두 찾아내어 차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해충의 다중방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즉, 첫째 방어선은 수출국에 나가서 병해충 안전지역을 설정하거나 현지소독, 현지검역으로 차단하고, 둘째 방어선은 도착지의 현장과 실험실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정밀거름 과정을 거치고, 셋째 방어선은 국내에 침입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지역별로 예찰(豫察) 담당 지역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 예찰을 실시하여 발생 초기에 조기 박멸(撲滅)시키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농약정보**